

## 2026년 9월분 학교급식용 식재료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lt;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gt;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 건 명                   | 품명 및 규격                     | 기초금액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
|-----------------------|-----------------------------|------------|------------------------------------------------|-----------------------|
| 2026년 9월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 돼지고기(등심) 외 9종<br>(현품설명서 참조) | 5,139,000원 | 2026. 8. 19.(수) 11:30<br>2026. 8. 25.(화) 10:00 | 2026. 8. 25.(화) 11:00 |

나. 납품장소: 원화중학교 급식실 (☎ 053-234-9798)

다. 납품기간: 2026. 9. 1. ~ 2026. 9. 30.(총 7일간)

라. 납품방법: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붙임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급식용 육류)'에 의함.

## 2. 견적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이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총액견적입니다.
-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마.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9.(수) 11:30 ~ 2026. 8. 25.(화) 10:00

##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5.(화) 11:00, 원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라.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점 시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 계약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6. 현품설명

현품설명 =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현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원화중학교 급식실 (☎ 053-234-9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 견적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pm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3]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을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 바. 최종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10일 이내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제출 서류 안내 >

1.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계약보증서 1부
3. 수의계약각서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보험증 사본 1부
9. 소득증명서(소득필증) 사본 1부
10.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11. 사업장확인서 사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2.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13. haccp 인증서 사본 1부

## 11. 청렴계약이행

-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계약특수조건상의 원화중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원화중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2. 기타 참고사항

-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으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를 납품 취소 또는 연기 할 수 있습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라.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마.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사.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원화중학교 행정실 (☎053-234-9792)
  - 물품에 관한 사항: 원화중학교 급식실 (☎053-234-9798)

- 붙임 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수의계약각서 1부.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급식용 육류)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원 화 중 학 교 장**

## 붙임 1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원화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원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당,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 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원화중학교장 귀하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 ■ 부패신고

##### ○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제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 ○ 신고방법

·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

공익신고(청렴포털)

· 전화: (053) 231-0102 ~ 0107

· 팩스: (053) 757-8209

· 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 · 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26.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붙임 3

## 각 서

|        |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화중학교장 귀하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급식용 육류)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8:30 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하며, 조식의 경우 전일에 납품 검수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기로 한다.

###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교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 ⑤ 냉동식품의 경우 “해동 중” 상태임( ‘해동을 요청한자, 해동시작 시간, 해동한 자’ 의 내용 포함)를 표시한다.

**제3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복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은 해지되기로 한다.

-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 보관·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① 쇠고기 유전자(DNA)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회 실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②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